

(第11回－文化教育第3次)

<p>(議事棒 3打)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조례 제1609호 서울특별시 중·고등 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5. 서울學生修鍊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提出) (15時 04分)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學生修鍊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education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社會教育體育局長 李成卓 社會教育體育局長 提案說明드리겠습니다. 서울學生修鍊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改正理由는 襄陽 臨海修鍊場 用地確保의 어려움으로 閉鎖됨에 따라 關聯條項을 整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改正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04條입니다.</p> <p>主要骨子는 襄陽 臨海修鍊場을 削除하는 것입니다. 本 條例 第2條 中 4 襄陽臨海修鍊場이 江原道 襄陽郡 龜陽面 松田里 山 1番地 6號의 名稱 및 位置를 削除하는 것입니다. 이상 提案說明드렸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. 서울學生修鍊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</p>	<p>(報 告)</p> <p>1. 제안경위 본 조례(안)은 1993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</p> <p>2. 제안사유 양양임해수련장의 용지확보의 어려움으로 폐쇄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</p> <p>3. 주요골자 양양임해수련장을 삭제함.</p> <p>4. 근 거 가. 지방자치법 제104조</p> <p>5.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공동체의식을 함양 하며,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유능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학생 수련장 설치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1989. 6. 30. 조례로 제정하였고,</li> <li>○ 학생수련장은 네 곳에 위치하여 모현야영수련장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 산 25번지의 1호, 퇴촌야영수련장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산 279번지의 2호, 대천임해수련장은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 신혹리 1454번지에 위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,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산 1번지의 6호에 위치한 양양임해수련장은 1988년 7월부터 1991년 7월까지 위치상 3,300㎡(양양군 소유)를 임차운영하였으나, 동 수련시설 설치를 위해 용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, 2차에 걸쳐 양양군의회에서 매각 부결되었을 뿐 아니라, 수련장 임차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'92. 4. 17. 양양임해수련장을 폐쇄하였으므로,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</li> </ul> <p>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本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</p>
--	--